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902

발의연월일: 2023. 3. 27.

발 의 자:백혜련·정태호·이정문

김철민 • 윤관석 • 이학영

박용진 · 임호선 · 한정애

정성호 · 김종민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·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 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한편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, 피해학생의 회복 및 충분한보호를 위해 집행정지 심리·결정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 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·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 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 17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3(피해학생등의 진술권 보장에 관한 특례) ①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의2제 2항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「행정심판법」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·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(이하 이 조에서 "피해학생등"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등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등이 의견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등의 진술 없이 해당 집행정지를 심리·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피해학생등의 진술권 보장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3의 개정규

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신 설>	제17조의3(피해학생등의 진술권 보장에 관한 특례) ① 「행정 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위원 회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가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「행정심판 법」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청 한 집행정지를 심리・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(이하 이 조에서 "피해학생등" 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 학생등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등이 의견 진술을 원하지 아 니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등의 진술 없이 해당
	<u>있다.</u>